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획예산과

(2010. 9.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

4. 근거법령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145호, 2010. 5. 4.)

「공무원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동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1호」로 최초 제정되고, 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22145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안제도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1조(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으로 개정하여 마포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우리구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2) 안 제3조(정의)에서는 참여대상의 확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구민들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구민제안과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으로서”를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공모에 응하여 구에 접수되는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으로” 개정

(3) 안 제4조(제안자격 및 제출)에서도 참여대상의 확대에 따라 “국민 또는 공무원은”을 “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구정과 관련된 제안을”으로 변경

(4)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의 시책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등은 제13조(창안의 등급),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5조(부상금의 지급)을 준용하도록 규정

(5)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도있는 제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 등 7명이내로 구성

(6) 안 제8조의 2항을 신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1차적으로 실질적인 심사할 수 있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부서장,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였고 실무위원회의 역할과 심사 대상 사항을 규정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 78조 및 「국민제안규정」 제22145호에 따라 제안 참여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여 우리 구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생활공감 정책 제안제도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생활에 도움을 줄 있는 제안제도를 매년 정책적으로 공모, 발굴하므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첫번째로 제안제도에 대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며 특히 시행규칙의 제정에 앞서 「마포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창안의 등급 명칭,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수, 실무위원회 설치 등 동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동 조례의 시행규칙과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던지 공무원 제안규칙을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제15조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율 제고와 공무원 내부조직의 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부상금의 현실적인 조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